

형식승인 신청서

☐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인 (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품목	품명 1	형식 1
	품명 2	형식 2
	품명 3	형식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첨부서류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첨부하지 않습니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합니다] 2부	수수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을 참조하십시오
------	--	---

작성 방법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0항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포함된 소방용품(이 신청서에서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품명 1 및 형식 1에만 기록합니다.
-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서의 품명 및 형식승인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을 품명 1 및 형식 1에 기록하고, 그 외의 소방용품은 다음 품명 및 형식란에 기록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